

20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2018년도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·기관과 동 사업의 각 과제에 대한 수행협력기관으로서 표준·특허분석 등을 지원할 전문변리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2월 26일
특허청장

1 사업 목적

-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·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

2 사업 개요

- 지원 세부 내용
 - (일반현황 분석) 참여기관 보유 특허 분석, 기술동향 분석
 - (표준 분석) 표준화 기구별 표준동향 분석,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, 표준문서 분석
 - (특허 분석)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,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,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
 - (표준특허 확보전략)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&D 방향,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·출원·보정 전략,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제공

지원 방식

-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(PM)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·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

추진 체계

| 구 분 | 역 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특허청 | ▪ 사업계획 수립,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, 평가 |
| 주관기관 (한국특허전략개발원) | ▪ 지원과제, 과제 수행협력기관 선정·관리 및 운영지원 |
| 표준특허 전문가(PM) | ▪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개별 과제 관리·지원 ▪ R&D 및 표준화 방향 제시, 표준특허 전략 도출 |
| 지원기관 (대학·기업·연구기관) | ▪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 |
| 수행협력기관 (표준특허 전문변리사) | ▪ 표준·특허 검색 및 분석 ▪ 표준화하고자 하는 기술의 권리화 지원, 표준특허 교육 실시 |

3

지원기관 신청 자격

신규과제

- (R&D)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·민간 R&D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
- (표준화) 정부표준화사업*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·연구소
*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(과기정통부),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(산업부)
- (강소기업) 국제표준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·개발 중에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계속과제

- 상기 자격에 따라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바 있는 기업·기관으로서 국제 표준화 활동 중인 기업·기관

- 기업·기관별 표준특허 보유역량을 사전 진단*하고 보유역량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
- * 지원기업·기관이 스스로의 역량을 자기진단하고 주관기관 문의를 거쳐 유형별로 신청
→ 과제선정평가 시에 신청유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유형 조정
 - (유형 1) 전반적인 표준특허 확보역량을 갖춘 기업·기관
 - * (예시) 이미 국제표준에 관련된 표준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·기관
 - (유형 2) 표준화 역량은 있으나 표준특허 확보역량이 부족한 기업·기관
 - * (예시) 보유한 표준특허가 없거나 부족하지만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·기관
 - (유형 3) 표준화 역량, 표준특허 확보역량이 부족하나 국제표준화를 노려볼 수 있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기관의 정부표준화사업 수행 여부와 기업규모(중소/중견)에 따라 지원기관의 부담금 차등화

< 단위: 만원 >

| 과제 유형 | | 과제 단가 (지원개수) | | 지원기간 | 지원기관 부담금 |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|--|
| | | R&D | 표준화 | | | |
| 유형 1 | 신규 | 40백(4개) | 28백(5개) | 5개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R&D: 과제 단가의 30%(전액 현금) ▪ 표준화: 별도 지원기관 부담금 없음 | |
| | 계속 | 20백(2개) | 14백(2개) | 2.5개월 | | |
| 유형 2 | 신규 | 80백(6개) | 56백(7개) | 9개월 | | |
| | 계속 | 40백(2개) | 28백(3개) | 5개월 | | |
| 유형 3 | 신규 | 160백(4개) | | 9개월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소기업 - 과제단가의 30%(현금 10%, 현물 20%) ▪ 중견기업 - 과제단가의 30%(현금 15%, 현물 15%) |
| | 계속 | 80백(3개) | | 5개월 | | |

* 과제단가는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,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분석 비용 등으로 사용

**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,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가능함

*** 지원기관 : 지원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

5

수행협력기관(전문변리사) 신청 안내

□ 수행협력기관이란(이하 '협력기관'이라 함)

- 20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특허·표준 분석을 수행할 전문 변리사
 - 각 과제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의 표준특허 전문가와 함께 지원 전담팀을 이루어 표준·특허 분석 및 특허설계 등을 지원
 - 표준특허 유망기술 도출을 위해 표준·특허 분석 및 평가를 수행
- 표준·특허 분석 및 특허설계 등 협력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협력기관에 용역비*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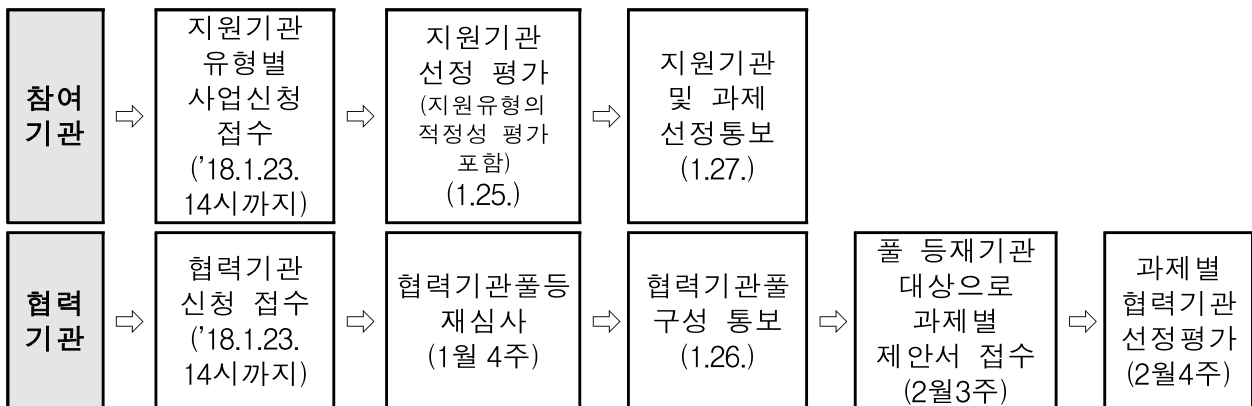
* (신규과제) 15백만원 내지 45백만원, (계속과제) 8백만원 내지 20백만원

□ 과제별 협력기관 선정 방식

- (풀 등재) 사업신청 기간 동안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행하기를 희망하는 전문변리사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협력기관 풀 등재심사 후 심사요건*을 만족하는 기관은 '18년 협력기관 풀로 일괄 등재
- * 심사관+변리사 경력 36개월 이상이며, 표준관련업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
- (선정) 지원과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별로 '18년 협력기관 풀 내에서 협력기관 제안서를 신청받은 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

6

일정



* 일정은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접수처

- 신청서 e-mail 접수 : epcenter@kista.re.kr

* e-mail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02-3475-8562)

 문의처

-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(www.epcenter.or.kr)

| 구 분 | | 연락처 | 역 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시행 부처 | 특허청 (산업재산창출전략팀) | 042-481-8499 | · 시행계획 일반 |
| 주관 기관 | 한국특허전략개발원 (표준특허센터) | 02-3475-8589, 02-3475-8560 | · 사업신청·접수, 사업신청서 작성, 서류제출, 선정평가,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 |